



재해 개요

- 2022. 09. 13.(화) 11:35경, 경기 □□시 △△구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피해자가 ◇◇ 주변 산 경사지반의 토사 및 암석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를 운전하여 임의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던 중 전도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굴착기(차량계 건설기계) 사용 작업 시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**
 - 굴착기가 이동 가능한 지반(통로) 확보 및 굴착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한 발판의 고정상태 확인 등의 굴착기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
- 굴착기(차량계 건설기계) 사용 작업 작업계획서 미작성**
 -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·지반상태를 고려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, 굴착기(차량계 건설기계)의 운행경로·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
-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미흡 및 위험성 감소대책 미준수**
 - 굴착기 작업 위험성평가 시,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하나, 굴착기 전도·추락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굴착기(차량계 건설기계) 사용 작업 시 전도방지 조치 실시**
 -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 후 그 계획에 따라 굴착기의 운행경로 확보하여야 하며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(고정)하고,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, 갯길의 붕괴 방지, 도로 폭의 유지 등 전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굴착기(차량계 건설기계) 사용 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**
 -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굴착기(차량계 건설기계)의 운행경로·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
- 위험성평가 시 작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**
 - 최초 위험성평가 시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,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